[별표 7]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<개정 2013.6.3>

설 계 기 준
1. 경사로 및 계단 -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- 경사로 참의 유효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-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 설치 - 경사로, 계단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착 -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2. 주거동 현관 출입구 - 유효 통과폭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- 문의 전·후면에 여유 공간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-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거동 입구에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하고,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현관문 개폐시간 및 속도조정 - 방향 및 위험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점자블록 설치 - 바닥의 단차 제거 3. 주거약자용 주택이 계획된 층의 주거동 공용복도 및 통로 -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유효폭 150센티미터 이상의 교행공간 확보 - 복도 외측에는 지름 3.2~3.8센티미터의 핸드레일을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격하여 75~8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 -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- 주거약자용 주택이 설치된 층으로부터 1층까지의 계단 시작 및 끝부분에서 30센티미터 이격된 거리에 점자블록 설치 4. 승강장 및 승강기 - 승강기 전면 150×150센티미터 공간 확보 - 승강기 호출 버튼앞 30센티미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- 승강기 대기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을 계획 - 승강기 출입구의 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- 승강기 내부공간 150×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- 승강기 내부에 안전 손잡이 설치